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정영길 의원외 7명

2. 제정이유

○ 최근의 국제결혼 증가로 우리군에도 다문화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다문화가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근거 규정(안 제4조)
나.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(안 제6조)
다.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 규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나. 예산사항 : 관련 있음

5. 검토의견

□ 발의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음.

□ 조례안 제정이유

○ 최근의 국제결혼 증가추세로 우리군에도 다문화가족이(결혼이민자 200여명, 자녀수 230여명)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하루빨리 적응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,

○ 나아가 군민의 한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**행·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**하기위하여 정영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생각됨.

○ **특히,** 여타 시·군보다 우리군이 먼저 다문화가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줌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.

□ **주요내용**

○ 조례안의 구성은 **전문11조와 부칙**으로 되어 있으며,

○ 다문화가족에 대한 군수의 책무, 지원대상자, 지원계획과 지원사업, 실태조사, 예산지원,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**적절하다고 판단됨**.

□ **결론적으로**

○ 본 조례안의 구성과 체계, 내용 등 **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** 「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여 **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**

○ **다만,** 「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」을 **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바**

■ **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시켜 이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